103.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되어 "무사고 기간"이 변경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종으로 전환하여, 이후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변경하고 최초 계약체결시점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전환 적용대상)

- ①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계약의 계약자가 제4조(계약전환 안내 및 계약전환의 신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상품 내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종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1.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일 것
 -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일 것

예 시 위험이 감소된 경우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 1. 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2. 최초계약일부터 2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3. 최초계약일부터 3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4. 최초계약일부터 4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5. 최초계약일부터 5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6. 최초계약일부터 6년간 6대 질병의 진단확정 및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3. 전환전 계약이 3.6.5형 계약이 아닐 것
- ②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 기간"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무사고"라 함은 아래 제1호 내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장기요양 보장 특별약관은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보장 특별약관

-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 방문요양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 시설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 월1회한)(간편가입)【갱신계약】
- 재가급여지원금(장기요양 1~5급/인지지원등급, 월1회한)(간편가입) 【갱신계약】
-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6대 질병" 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유의 사항

"6대 질병"이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심사하는 암(백혈병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을 말합니다.

- 3.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인지기능장애, 치매(의증포함) 또는 파킨슨병으로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또는 "진단" 받거나 "치료" 또는 "투약"을 받지 않은 경우
- 4.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무사고 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무사고 "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

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전환 안내 및 계약전환의 신청)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차 및 계약전환 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② 제1항의 "계약해당일" 이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날을 말하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심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계약전환 신청기한
3.0.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1.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2.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3.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4.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5.5형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3.6.5형	계약전환 불가

제3항에서 정한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계약전환의 적용)

①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하여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후 계약"은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 기간"의 정의)에서 정한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 계약으로 적용됩니다.

["무사고 기간" 별 전환가능계약]

전환전 계약 (계약체결시)	전환가능계약						
	무사고기간 (1년)	무사고기간 (2년)	무사고기간 (3년)	무사고기간 (4년)	무사고기간 (5년)	무사고기간 (6년이상)	
3.0.5형	3.1.5형	3.2.5형	3.3.5형	3.4.5형	3.5.5형	3.6.5형	
3.1.5형	3.2.5형	3.3.5형	3.4.5형	3.5.5형	3.6.5형		
- 3.2.5형	3.3.5형	3.4.5형	3.5.5형	3.6.5형			
- 3.3.5형	3.4.5형	3.5.5형	3.6.5형				
- 3.4.5형	3.5.5형		3.6		전환불가		
3.5.5형	3.6.5형				전환불가		
3.6.5형	전환가능계약 없음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 됩니다.
 - 1. 보장내용
 - 2. 갱신/비갱신 유형
 - 3.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납입면제형/납입면제 미적용형)
 - 4. 해약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지급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 5. 간편심사 유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전환전 계약"에서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세부 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해당 세부 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함). "전환전 계약"에서 해당 특별약관이 "특별약관의 소멸" 조항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효력이 없어진 이후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환급합니다.

"전환후 계약"의 적용일은 회사의 계약전환 신청 승낙 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제6조(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후 계약"의 적용일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 이라 합니다)이 발생할

- 수 있으며 회사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계약전환 적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계약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만기(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변경 및 정산금액 등을 환급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전 계약의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 기간"의 정의)에서 정한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전환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받았던 정산금액과 이자(이하 "추징액" 이라 합니다)가 추징되며,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삭감한 후 지급합니다.
- 기계약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최초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